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동력비행장치의 범위에 고정익과 회전익의 비행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무인수직이착륙기가 포함되도록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405호, 2024. 11. 13. 개정, 2025. 5. 14. 시행)됨에 따라 무인수직이착륙기에 대한 조종자격을 추가하고, 해당 조종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관, 장비·시설기준 및 교육과정을 정하는 한편, 전문교육기관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매년 수립·게재하는 교육계획에 기관의 일반현황, 교육일정 및 교육비 반환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세부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3. 의견제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3. 31.(월) 까지 국토교통부장관(첨단항공과, 전화 044-201-4290, 팩스 044-201-56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우편번호 30103)